

# auri brief.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126

2016. 3. 30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김영현 부연구위원

### | 요약

- 2010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6년 3월 현재 15개 지자체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
- 제1차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 분석,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계획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도출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대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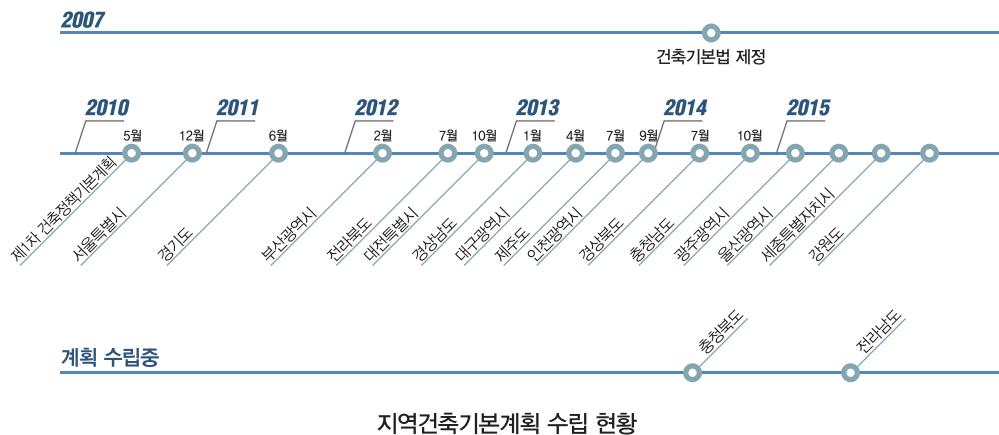
### | 정책제안

- 국가계획은 관련 법제 및 기준 마련, 건축 관련 행정프로세스의 개선,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지역계획은 지역의 현황 및 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사업 발굴에 중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신규 법령 제정에 따른 부문별 계획 간의 관계 정립
-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정책지원기구 간, 중앙과 지역단위의 지원기구 간 체계적인 업무분장 및 역할 분담이 필요
- 계획 수립 과정에 광역시 · 도의 관계부서 실무자를 비롯하여 계획을 실행하는 시 · 군 · 구 기초지자체 행정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도

## 1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현황과 특징

### ■ 계획 수립 현황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이후 서울을 시작으로 15개 지자체가 이미 지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16년 3월 현재 충북과 전남에서 계획 수립 중
- 상위계획인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은 2015년도에 공청회 개최 및 국가건축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2016년도 상반기에 대통령 보고 후 공표될 예정
- 지역건축기본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한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제1차 지역건축기본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2차 계획 수립 준비 중



###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특징

- (계획 수립 기간 및 주체) 수립 기간은 약 12개월~20개월로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 되며,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정부출연기관, 지역발전연구기관, 대학 산학 협력단, 관련 학·협회 등에 학술연구용역 형태로 위탁하여 계획을 수립
- (구성체계) 일반적으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부합하기 위하여 건축·도시디자인 향상, 녹색건축·도시 관련 산업 육성, 건축문화 진흥 등 3대 목표 체계 유지<sup>1)</sup>
  - 상위계획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또는 기준, 지역별 현황 및 여건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의 정책방향 등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

1)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한 11개 지자체 계획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

- (계획 실행체계에서의 특성) 「건축기본법」에 계획 수립 · 시행 시점이 5년마다로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단 · 중 · 장기의 단계별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5년 내에 시행 가능한 단기과제를 구분
  - 주로 5년 내에 시행 가능한 단기과제로는 조례 제 · 개정,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전문가의 역량 강화 및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중 · 장기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음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구성 및 특징

지역	계획목표 연도	구성 및 내용	성격 및 특징
서울	2011년 ~2015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건축 문화'를 비전으로 3개 목표, 6개 추진 전략, 15개 실천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후 처음 수립되는 최초의 광역건축기본 계획</li> <li>•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등 공공부문에 초점을 둔 계획</li> </ul>
경기	2011년 ~2016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기'를 비전으로 3개 목표, 6개 전략, 13개 실천과제, 6개 핵심 전략 사업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다 인구 거주지역으로서 31개 시 · 군이 도시, 농어촌, 도농혼합 등 대한민국의 축소판</li> <li>• 경기도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31개 시 · 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li> </ul>
부산	2011년 ~2015년	'시민의 건축 · 품격 있는 부산'을 비전으로 3대 목표, 9대 전략, 22개 정책과제와 23개 실천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사업 발굴보다 기존 건축 · 도시 관련 사업과 상호 연계 및 발전 시키는 과제 위주</li> </ul>
전라 북도	2012년 ~2017년	'전통과 미래,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의 터전'을 비전으로 3대 목표, 6대 전략, 12개 실천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옥 등 전통적인 건축문화자산이 풍부한 이점을 살려 건축문화의 보존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부문에 중점</li> <li>•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구분</li> </ul>
대전	2013년 ~2017년	'창조적 녹색건축 문화 공동체, 대전'을 비전으로 3대 목표, 6대 전략, 18개 실천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에 의한 정책을 다수 포함 · 강조</li> <li>• 건축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 전문가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 사업에 초점</li> </ul>
경상 남도	2013년 ~2017년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드는 고품격 녹색 경남 건축'을 비전으로 3대 목표, 6대 전략, 14개 실천 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마다 단계별 계획 목표를 정하고, 1~4차까지 향후 20년 중장기 계획 수립</li> </ul>
대구	2013년 ~2017년	'문화 중흥지, 시민의 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3대 목표와 6개 전략, 13개 실천과제와 48개 세부 과제로 구성, 건축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선도 과제로서 6대 핵심전략 사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내 사업 추진시점을 단기, 중단기, 장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li> <li>• 시민 참여제, 이전 후적지 내 랜드마크 개발, 대구건축 우수 품질인증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li> </ul>
제주	2013년 ~2018년	'전문가와 함께하는 품격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3대 목표, 15개 중점과제, 4개 지원과제, 2개 중 · 장기 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안변과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관리 방안 및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등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 고려</li> <li>•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단기과제의 경우에도 중요도 및 사업성격에 따라 중점과제와 지원과제로 구분</li> </ul>
인천	2014년 ~2018년	'함께 만드는 건축문화, 아름다운 인천'을 비전으로 3대 목표, 9대 전략, 18개 실천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재해 · 재난 등 안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의 실천과제 도출</li> <li>• 실천과제별 성격에 따라 단기 · 중기 · 장기 실행시점 구분</li> </ul>
경상 북도	2014년 ~2018년	'경상북도 고유의 아름답고 건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3개 부문별 목표와 12개 전략, 35개 정책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 친화적 생활건축사업, 경상북도형 알뜰 지역재생사업,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 전략 등 농어민의 서민 친화적인 정책과제 발굴</li> </ul>
충청 남도	2014년 ~2019년	'충남다움, 어울림의 건축문화 창조'를 비전으로 3개 목표, 8개 추진전략, 19개 실천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건축기본계획과 녹색건축을 조성계획이 통합된 종합계획</li> <li>• 단 · 중 · 장기의 1~3차 건축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5년 내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6개 핵심전략사업 구성</li> <li>• 세부실천과제에 대해 지역현안 및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시 · 군별 추진 사업 구분</li> </ul>

-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대부분 인구구조 및 정주환경, 도시구조 및 경관, 건축물 및 공공공간, 건축문화자산, 건축서비스산업, 전문가 및 주민 인식조사 등 6개 부문 조사
- (예산계획) 9개 지자체의 수립된 예산계획을 파악한 결과, 건축 관련 사업예산은 총 770,985백만 원으로 집계됨
  - 인천(189,545백만 원), 대전(187,000백만 원), 충남(186,410백만 원), 부산(87,240백만 원), 제주(36,900백만 원), 경남(29,370백만 원), 경기(26,300백만 원), 경북(15,350백만 원), 전북(12,870백만 원) 순으로 높게 집계됨
  - 경기도와 대전은 녹색도시, 부산은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건축문화자산 관련, 제주도는 경관, 인천은 주거환경과 공공공간·건축 조성, 경상북도는 경관과 공공공간·건축, 충청남도는 건축문화자산 관련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함
- (성과관리) 별도의 TF팀을 구성하거나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성과를 점검한 사례는 서울<sup>2)</sup>과 경기도였으며, 대부분 실무자의 업무 과중 및 성과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성과관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 관리 실무자 및 전문가의 인식

###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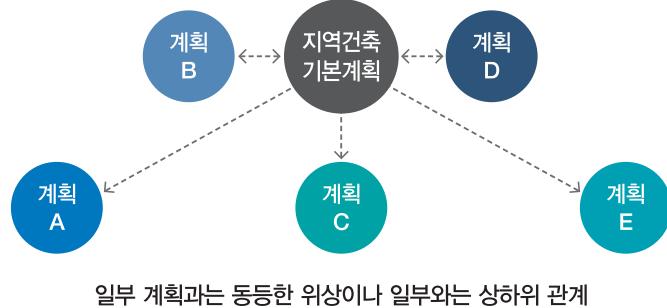
- (조사 목적) 문현 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 실무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
- (설문응답 구성) 관계자 191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2015.6.28.~7.8.)하여 총 63인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관계 실무자(공무원)는 21인(33.3%), 전문가는 42인(66.7%)임

### ■ 관리 계획 간의 관계 및 위상

- 건축과 관련하여 지역 단위에서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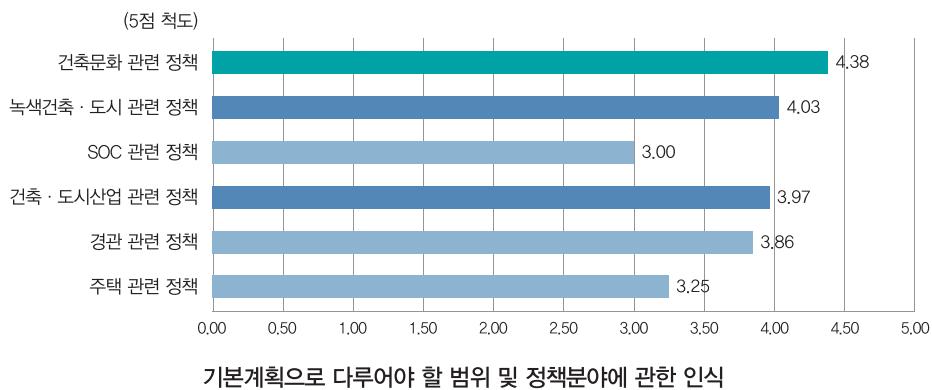
2) 서울시만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건축기본조례 내 성과관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

- 질문 응답자의 50.79%가 ‘일부 계획과는 동등한 위상이나 일부와는 상하위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부 계획 및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25.40%)’라고 응답



### ■ 지역건축기본계획이 다루어야 할 정책분야 및 범위

- 지역건축기본계획이 다루어야 할 정책분야로는 ‘건축문화 관련 정책(4.3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녹색건축 · 도시 관련 정책(4.03)’, ‘건축 · 도시산업 관련 정책(3.97)’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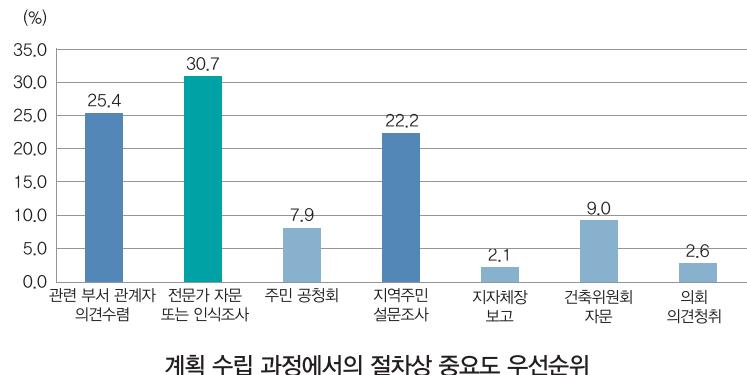
### ■ 기본계획 내용의 구체성

- 계획의 세부실천과제가 정책으로 실행되기에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34.92%)가 많았으나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30.16%였으며, 전문가 집단에서는 ‘전혀 구체적이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14% 차지

### ■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중요한 절차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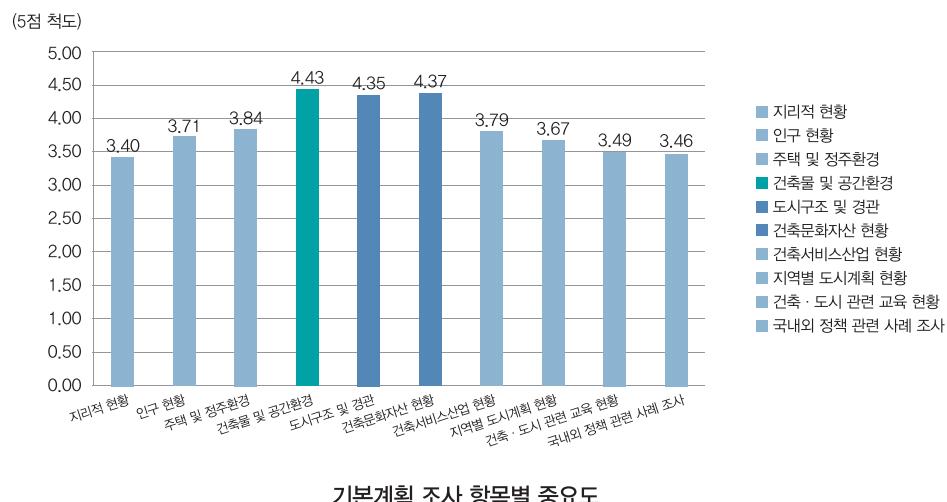
- 전문가 자문 또는 인식 조사(30.7%), 관련 실 · 국별, 시 · 군별 관계자 의견 수렴(25.4%), 지역주민 설문조사(22.2%) 등 3가지 절차를 가장 중요한 절차로 생각함

- 반면에 건축위원회 사전자문(9.0%), 주민 공청회(7.9%), 도·시의회 의견청취(2.6%) 등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소 형식적이라고 인식



### ■ 계획 수립 과정에 필요한 조사 항목별 중요도

- 대부분 보통 이상의 중요도를 보였으나, 특히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현황파악(4.43), 건축문화자산 현황 및 특징(4.37), 도시구조 및 경관 현황(4.35)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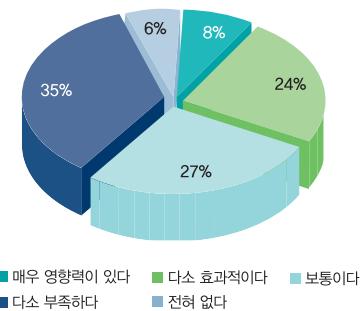


### ■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 계획이 영향력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34.92%는 계획의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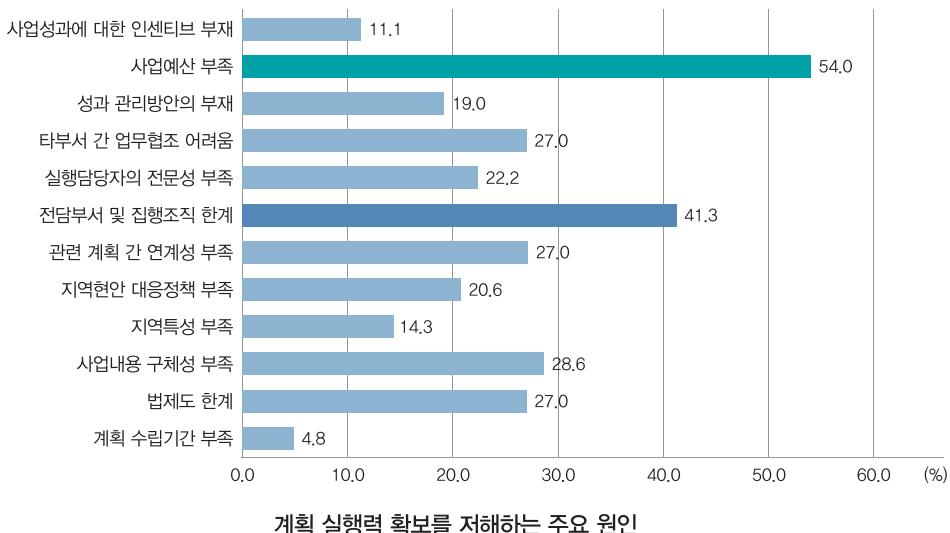
### 기본계획 실효성에 대한 인식

구분	관계 실무자 (단위: 명, %)	전문가 (단위: 명, %)	총 합계 (단위: 명, %)
매우 영향력 있음	2 9.52	3 7.14	5 7.94
다소 효과적	7 33.33	8 19.05	15 23.81
보통	5 23.81	12 28.57	17 26.98
다소 영향력 부족	7 33.33	15 35.71	22 34.92
전혀 없음	0 0.00	4 9.52	4 6.35
총 합계	21 100.00	42 100.00	6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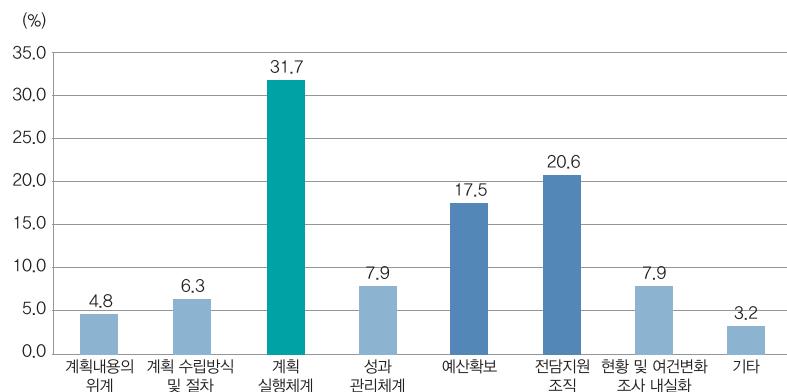
### ■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

-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 예산 부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54.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담부서 및 집행조직의 한계(41.3%)를 주요 원인으로 인식
- 그 밖의 원인으로 사업 내용의 구체성 부족(28.6%), 타 부서 간 업무협조의 어려움(27.0%), 관련 계획 간 연계성 부족(27.0%), 법제도의 한계(27.0%) 등의 순으로 인식



### ■ 계획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 응답자 대부분이 계획 실행체계에 대한 개선(31.7%), 건축정책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 조직 마련(20.6%),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 확보(17.5%) 등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 3 계획의 한계와 실행력 부족 원인

#### ■ 계획 구성 및 내용 자체의 문제

- (계획 범위 및 타 분야 계획과의 불분명한 관계) SOC 국가기반시설까지 광범위하게 다루는 정책대상 범위에 대한 고려 필요
  - 주택정책기본계획, 경관계획, 건설기본계획 등 타 분야 계획 간에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
- (현황 조사 및 지역현안의 문제 파악 부족)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현황이나 사례를 조사
  - 동일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거나 지리, 지형, 기후, 인구, 행정구역, 토지이용 등 일반 현황에 많은 부분을 할애함
- (지역건축기본계획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성격의 사업 발굴) ‘관련 법령 간의 연계·통합 과제’, ‘도시재생 정립에 관한 과제’, ‘건축산업 육성’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정책과제들이 상당 부분 지역계획에 포함됨
- (부족한 지역예산으로 인한 소극적인 계획 수립) 한정된 예산 상황으로 인해 소요 예산이 적거나 불필요한 조례 제정, 계획기준 및 지침, 교육 부문에 중점

#### ■ 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 측면의 문제

- (계획 수립 시점에 대한 문제) 지난 5년간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새롭게 제정된 건축 관련 법령 및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지자체장의 공약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 지역 전체의 종합적인 성과관리의 어려움 등

- (기초지자체 실무자에 대한 협의 부족) 매년 지역예산계획 수립 과정에서 건축기본 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부서 실무자가 기본계획의 내용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계획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규정 부재) 「건축기본법」 및 지자체 건축기본조례에서 성과를 관리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건축기본법」에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국회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지역계획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음

## 4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 건축정책의 대상 및 범위 재설정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격) 특정 시설과 공간에 대한 계획이 아닌 법규, 행정프로세스, 설계 발주 및 계약, 지침과 기준, 건축기술, 교육 등 정책수단을 개선하여 건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계획
-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차별화) 국가 단위에서는 특정한 공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제도적 측면, 행정프로세스, 기술개발 등에 초점을 두는 반면,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현황 및 공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간상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sup>3)</sup>
  - 국가계획의 정책 대상 : 법, 지침 및 기준, 행정프로세스 개선, 기술개발, 산업육성 및 지원 등 제도적 측면에 초점
  - 지역계획의 정책 대상 : 지역 공간에 대한 현황 및 문제 진단, 실질적으로 공간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사업에 초점

### ■ 지역 현안 조사의 내실화 및 계획 과정에 관계자 참여 유도

- 지역 내 건축물의 단순한 물량 파악이 아닌 질적 품질 및 성능 현황 수준을 조사
  - 지역 내 기 추진 중인 사업현황, 지자체장 공약, 부서별 업무계획 등 실행으로 옮겨지는 내부 행정자료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

3) 예를 들어 국가계획에서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의 계약제도 및 지침을 개편한다면,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내 공공 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접목한 지역 내 공공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건축물 및 도시환경의 품질 및 성능이 저하되는 원인을 파악하도록 심도 깊은 조사를 진행할 필요
- 계획이 실행되고 추진되는 것은 지역 시·군의 기초지자체 및 관련 부서 실무자의 의지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함
  - 계획 수립 과정에 광역시·도의 관계 부서 실무자를 비롯하여 계획을 실행하는 시·군·구 기초지자체 행정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 건축 관련 신규 법령 제정 및 계획 간 관계 정립

- 지난 5년간 건축정책이 도입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신규 법령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건축정책 부문별로 세분화된 계획이 수립될 예정
  - 건축정책기본계획과 동등한 위상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법정계획 : 「국토 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주택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 등
  -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상하위 관계에 있는 법정계획 : 「건축기본법」 상에서의 지역 건축기본계획, 건축정책의 부문으로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계획 등
  -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상호보완적 관계의 법정계획 : 「국토기본법」에 의한 도종합 계획, 수도권 발전계획, 지역개발계획, 「경관법」에 의한 지역경관기본계획, 「주택법」에 의한 시·도 주택종합계획,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 등
  -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상하위 관계에 있는 법정계획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해당하는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sup>4)</sup> 등

### ■ 정책지원기구 간의 관계 정립

-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정책지원기구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한옥 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녹색건축센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등의 국가 단위의 정책지원기구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모든 사업에 대한 관리, 자문, 교육, DB 구축 사업을 추진
- 향후 기구 운영이 제대로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중앙과 지역 단위의 지원기구의 업무 분장 및 역할 분담이 필요

4) 현재까지 시·군·구 기초건축기본계획은 수립된 바 없지만 건축기본법 위계상 광역건축기본계획과는 상하위 관계

## 정책지원기구의 역할 및 관계

근거법령	정책 지원기구	주요업무	하위 지원기구	주요업무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	공공건축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li> <li>•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li> <li>•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li> <li>•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li> <li>•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li> <li>• 공공건축의 유지 · 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li> <li>•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li> <li>•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li> </ul>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sup>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li> <li>• 지역 공공건축 발주,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li> <li>• 지역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 · 관리에 대한 자문</li> <li>• 지역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li> <li>• 지역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li> </ul>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 한옥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 연구 · 조사</li> <li>• 한옥과 관련한 전문산업의 육성</li> <li>• 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li> <li>• 한옥에 대한 국내외 홍보</li> <li>• 그 밖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지역 한옥 지원센터 <sup>6)</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9개념의 한옥증급센터</li> <li>• 한옥기술 R&amp;D 개발</li> <li>• 대 시민 상담과 교육</li> <li>• 한옥 산업 박람회</li> <li>• 시민 한옥체험 등</li> </ul>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지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li> <li>•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li> <li>•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li> <li>•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 · 관리 지원</li> <li>•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 관리 등에 관한 업무</li> <li>• 도시재생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li> <li>•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li> <li>•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li> </ul>	도시재생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li> <li>•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li>•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li> <li>• 미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 건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에너지 · 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li> <li>• 녹색건축의 인증</li> <li>•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li> <li>• 그 밖에 녹색건축을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ul>	녹색건축 전담조직 <sup>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 ·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li> <li>•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li> <li>•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li> <li>•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li> </ul>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li> <li>•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 · 개발 · 도입 · 지도 및 보급</li> <li>•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li> <li>•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홍보</li> <li>•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li> <li>•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li> <li>•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li> </ul>		

## ■ 전담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역발전연구원의 활용

- 계획을 수립한 후 실행 과정에서 별도의 담당 실무자가 부재하고, 해당 부서의 다른 업무와 병행하기 때문에 건축기본계획만을 추진 ·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계획 수립뿐만이 아닌 성과 점검과 평가에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발전 연구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극복할 필요<sup>8)</sup>

5) 현재에는 국가 단위에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정받아 중앙 및 지자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를 비롯한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 정착 이후에 차차 지역단위에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됨

6) 지자체 단위에서의 한옥지원센터는 근거법령은 없지만 지역 한옥 정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해 비법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 2015년 9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 한옥장인 · 국가한옥센터(관 · 산 · 연) 협력을 통한 현장형 한옥지원센터를 설립(서울시 보도자료, 2015. 9. 17.일자)

7) 녹색건축센터에 대한 하위 지원기구로 지역 단위에서의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함. 전담조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지역 한 곳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

8)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공공디자인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에 대한 사업기획, 컨설팅, 모니터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축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전담 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예산 확보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지자체 내에 주거, 도시재생, 녹색건축 등 정책부문 별로 전문화된 지원기구를 모두 설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건축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

### ■ 내실 있는 건축정책의 성과 관리 체계 구축

- 지역건축정책의 초기 목적 및 계획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모니터링과 성과에 대한 점검은 건축정책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기초자료가 됨
- 계획 내용에 대한 평가, 이행 과정에 대한 평가, 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 등 3단계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체계적인 건축정책의 성과관리를 제안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점검사항

구분	평가항목	중점사항
계획내용 평가	사업 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li> <li>• 상위계획과의 부합성</li> <li>• 사업추진 근거 및 적합성</li> </ul>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목표 및 수단의 적합성</li> <li>• 실행계획의 추진적합성</li> <li>• 실행주체의 적절성 및 업무분장의 명확성</li> </ul>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수립 주체의 타당성</li> <li>•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여부</li> <li>• 객관적인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을 통한 계획 실행력 고려 여부</li> </ul>
이행과정 평가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li> <li>• 재원 및 인력 등 투입된 자원의 적절성</li> <li>•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유관기관간의 연계 및 협조</li> </ul>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모니터링 여부</li> <li>• 사업 추진간 문제 발생 및 해결의 적절성</li> </ul>
	사업추진기간의 적절성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시점 및 완료시점의 적절성</li> <li>•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li> </ul>
성과결과 평가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설정의 근거</li> <li>• 성과목표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li> </ul>
	성과목표 달성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대비 사업 달성을 정도(정량적/정성적)</li> <li>• 사업 완료 여부</li> </ul>

김영현 부연구위원 (044-417-9619, [yhkim@auri.re.kr](mailto:yhkim@auri.re.kr))